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35199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변 론 종 결 2019. 3. 14.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4,026,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2016. 10. 8.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9%의, 2016. 12. 7.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부산 기장군 D 전 1,741㎡ 중 1/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들 사이에 2016.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27. 접수 제38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2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등기관리자가 아니므로, 이는 등기관리자인 피고 B에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4,026,85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9. 8.부터 2016. 10.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2016. 10. 8.부터 2016. 12.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2016. 12. 7.부터 2016. 12.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액수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

다.

2) 피고 B은 2016. 4. 26.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한 부산 기장군 D 전 1,741㎡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4. 27. 접수 제387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654,616,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323,260,000원 상당의 부산 기장군 E 임야 2,579㎡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합계 863,06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 F조합에 대한 480,000,000원 및 2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G에 대한 165,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각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B이 2016. 4.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7. 26.부터 H기관에 그 연체정보가 등록됨으로써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 B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인 2016. 8. 11. F조합으로부터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 원고가 2016. 9. 7. 위와 같이 미상환 외상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이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대물변제 주장

피고 C는, 2014. 2.경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 부산 기장군 J 외 2필지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B으로부터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편의상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4. 2. 3.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 부산 J 외 2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2.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C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부산 기장군 D 전 1,741m² 중 K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6,000,000원, 근저당권자 F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80,000,000원이었던 사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G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약 165,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54,616,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실제 피담보채무의 합계액은 645,000,000원(= 480,000,000원 + 165,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654,646,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

피고 C는, 2014. 2.경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에 부산 기장군 J 외 2필지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B으로부터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서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

청구원인

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가. 피고 B은 F조합(이하 'F'이라 함)과 사이의 거래약정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일	보험금액	피보험자	보험기간	증거
2015. 12. 14.	1억 6,000만원	F	2015. 12. 14. - 2016. 12. 13.	갑1호증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이 F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함)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을 부담하기로 되어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및 L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 보험사고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그런데 그 후 피고 B이 2016. 7. 26.경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에 대한 채무연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체정보가 H []에 등록되었고, H []의 연체등록 기준은 대출금의 경우에는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이고, 대위변제금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이므로, 원고는 피고 B []에 대하여 2016. 4.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갑2호증 참조)

순번	발생일	등록사유		등록기관	연체금액 (단위:천원)
1	2016. 7. 26.	대출금 연체	2016. 4.경	중소기업진흥공단	114,510
2	2016. 8. 1.	대출금 연체	2016.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	200,000
3	2016. 8. 1.	대출금 연체	2016.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	48,550
4	2016. 8. 24.	대출금 연체	2016.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	250,000
5	2016. 8. 24.	대출금 연체	2016.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	250,000
6	2016. 9. 12.	신용카드 연체	2016. 6.경	M [] 카드	6,064
7	2016. 9. 30.	신용카드 연체	2016. 6.경	N [] 카드	14,987
8	2016. 10. 12.	신용카드 연체	2016. 7.경	O [] 카드	13,200
9	2016. 10. 27.	대위변제 연체	2016. 7.경	신용보증기금	475,941
10	2016. 9. 21.	대출금 연체	2016. 6.경	O [] 은행	44,000
11	2016. 9. 21.	대출금 연체	2016. 6.경	O [] 은행	36,000

나. 이후 피고 B []이 F []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F []이 외상대출금 미상환을 사유로 2016. 8.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44,026,855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갑3호증 참조)

다. 그리하여 원고가 2016. 9. 7. F []에게 144,026,855원을 대위변
제함으로써 피고 B []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과 약정손해금 상당의 구
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갑4호증 참조), 피고 B []은 원고에게 위 대
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